# 2023년도 국 정 감 사 계 획 서

2023. 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목 차 >

1.	감사의 독	무적 ······ 1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2
4.	감사반의	편성 ······3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4
6.	감사요령	

# 1. 감사의 목적

『대한민국헌법』제61조, 『국회법』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분야의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법률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함.

## 2. 감사기간

- 10. 11(수) ~ 10. 25(수)

#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국감조사법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국감조사법 제7조제4호)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 농협경제지주회사  ○ 농협금융지주회사  ○ 농협은행  ○ 농협생명보험  ○ 농협손해보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국농수산식품의 평가원 ○학국시를 제육문화정보원 ○학국시생방역 점원 원원 ○학국식품인 급등원 ○한국식품원 급원 등원 ○한국식품관리원 원이한국식품관리원 원이한국식품사업 원본 이한국사임업진흥원이한국사임업진흥원이한국사임업지원본지진흥원이한국수목원정원지원원이한국수목원정원지원원이한국수목원정원자와 이원수광양만공사이원하만공사이원수광양만공사이원수광양만공사이원수광양한공사이하양환경공단이한국해양수산자원등공사이하당구산자원등공사이하당구상인수원이한국해양자의학기술원이한국해양자의학기술원이한국해양자학기술원이한국해양자학기술원이한국해양자학기술원이한국어환공단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은행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극지연구소
[국감조사법 제7조제3호에 직접 명시된 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4. 감사반의 편성

	T					
	◇ 위원장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감	◇ 위 원					
사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김승남	士, 서삼석, 신정훈, 안호영,				
위	위성곤, 윤재김	Y,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				
원	i i	李達坤, 박덕흠, 안병길, 이양수, 정희용,				
"	최춘식, 홍문표	1				
	(비교섭) 윤미향					
	◇ 위원회 직원(20인)	◇ 위원보좌진(19인)				
	-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 전문위원 정연수 '	◇ 정책연구위원(3인)				
	- 전문위원 - 공춘택	- 이호경(더불어민주당)				
	- 행정실장 김광선	- 김태호(국민의힘)				
	- 농림정책조사관 김현숙	- 오영철(국민의힘)				
	- 해양수산조사관 김미숙					
사	0 日 7 4 4 7 7 2 7 7 8 9 9	√ ≒/1++t 				
무	- 해양수산조사관 이구형					
   보	- 농림정책조사관 김소연					
노	- 농림정책조사관 박정현					
조	- 해양수산조사관 김현자 - 농림정책조사관 신민철					
자	- 해양수산조사관 김정엽					
	- 농림정책조사관 사승희					
	- 농림정책조사관 이길형					
	- 행 정 관 - 허성훤					
	- 주 무 관 김연아					
	- " 강현순					
	- " 채정현					
	- 행정실무원 정세리					

#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감사 대상기관	감사 장소	비고
10.11(수)	10:0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 회	【소속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10.12(목)	10:00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국 회	【소속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동해·서해·남해어업관리단, 지방해양수산청(부산·인천· 여수·마산·울산·동해·군산· 목포·포항·평택·대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부산·인천해사고등학교
10.13(금)	10:0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포함)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국 회	
10.16(월)	10:00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국 립 수목원 (경기 포천)	【소속기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산림교육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방산림청(북·동·남·중·서)
10.17(화)		국정감사 자료정리	ı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 장소	비고
10.18(수)	10:00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식진흥원	국 회	【소속기관】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10.19(목)		국정감사 자료정리		
10.20(금)	10:00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수협은행 포함)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해양 플랜트연구소, 극지연구소 포함)	부산	【소속기관】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방해양경찰청 (중부·서해·남해·동해·제주)
10.23(월)	10:00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국 회	
10.24(화)		국정감사 자료정리		
10.25(수)	10:00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국 회	

## 6. 감사요령

#### 가. 감사방법

감사는 각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서류제출요구, 증인 등 출석요구, 업무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현장 또는 문서검증의 방법으로 실시함.

#### 나. 서류제출요구

각 감사위원은 대상기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대상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함.

#### 다. 주요 감사사항

- (1)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기금 집행사항
- (2) 2024년도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 (3)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점검 및 대안 마련
- (4)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 (5) 소관 업무 집행 시 각종 법령 및 규칙 준수여부 확인
- (6)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 라.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사항

- (1) 2023년도 업무현황
- (2)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기금 집행현황(자료제출시점 기준)
- (3) 2022년도 및 2023년도 각종 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 (4) 2022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5) 2022년도 및 2023년도에 실시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시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6) 2022년도 및 2023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 (7)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 (8)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 마. 증인 등의 출석요구

- (1) 감사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되, 관계 부서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 (가) 국가기관(본부)은 국장급 이상(과장급 부서장 포함) 간부와 소속기관의 장
  - (나) 공공기관은 임원급 이상 간부(상임) 및 지역본부장(지사장)
  -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수산업협동조합중 앙회, 수협은행,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원급 이상 간부(상임), 지역본부장(농협은행, 수협은행 지역영업본부장 제외), 조합 감사위원장 및 상무급 집행간부
  - (라)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의 국장급 이상 간부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 (마) 그 외 기관은 임원급 이상 간부(상임)
  - ※ 기관장이 공석인 경우 직무대행자를 증인으로 채택함.
  - ※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해당 직위의 증인이 변경되거나 공석 중인 직위가 충원되는 경우 새로이 임명된 자가 감사대상기관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간주함.
- (2) 종합감사시 감사대상기관의 증인은 국가기관(본부)의 경우 기관장 및 관계부서장으로 하고, 그 외의 기관은 기관장으로 함.
- (3) 위원회는 그 의결로 관계인을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할 수 있음.

## 바. 정부 배석자

- 담당 실장(또는 담당 국장)

#### 사. 선서요령

- (1) 선서는 증인·감정인을 대상으로 실시함.
- (2) 증인·감정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함.
- (3)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이 기립하여 선서를 받도록 함.
- (4) 위원장은 증인·감정인의 선서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함.

## 아. 감사진행순서

- (1) 위원장의 감사개시 선언
- (2) 증인선서
- (3) 업무현황보고
- (4) 감사질의 및 답변
- (5) 위원장의 감사종료 선언